

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(제4차 본회의)

2013. 12. 11.(수) 10:00~

# 의안 심사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# — 목 차 —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3 ~ 102	거창군 삼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	3
2013 ~ 104	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	5
2013 ~ 103	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	7
2013 ~ 99	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9

# [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18.
- 나. 제출자 : 강창남, 김재권, 이애숙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1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1. 26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(2) 쌈지공원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3조)
- (3) 군수는 쌈지공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(4) 군수는 관리자에게 쌈지공원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지표를 제공토록 함(안 제5조)
- (5) 쌈지공원 관리우수공원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씬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씬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
- 나.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18.
- 나. 제출자 : 강철우, 안철우, 이성복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1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1. 26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(안 제2조)
  -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  -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  -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- (2)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(3)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(4) 헌옷 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(5) 헌옷 수거함 관리·운영자 지정 및 운영·관리자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

<운영·관리자 지정된 자의 업무>

-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-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-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-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
- 나.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[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18.
- 나. 제출자 : 강창남, 김재권, 이해숙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1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1. 26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(2)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(3)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(4) 폐농기계 일제수거기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군내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
- 나.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1. 18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1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1. 26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외식업소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을 다양화하고, 중소농, 고령농 중심으로 생산된 소량·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을 통하여 농가의 편의도모와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민간 위탁함으로써
- 민간중심의 생산자 조직화, 사용자 조직화, E-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마케팅역량 강화 등 유통·마케팅 고도화 전략을 완성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시설명 : 거창푸드종합센터
- (2)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소재 거점APC 부지내
- (3) 시설현황 : 연면적 712.5㎡ (지상2층)

계	1층				2층
	전시판매장	저온저장	선별장	화장실	
712.5㎡	180㎡ 판매대, 쇼케이스	107.8㎡ (4실)	162.2㎡ 컨베어, 포장기, 잡곡도정기	82.5㎡	180㎡ 사무실, 기타

○ 주요기능

- 농산물 순회수집, 선별, 소분, 저온저장 유통시설
- 지역 농특산물 전시·판매시설, 소규모 잡곡류 도정시설

(4) 위탁대상 업무

○ 시설 : 거창푸드종합센터 토지·건물과 기계 장비 운영 및 그 부대시설 유지·관리

○ 운영

-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 위임 또는 권장하는 사업
- 중·소·고령농 생산 농산물 순회수집
- 선별, 소포장, 저온저장, 유통 등 수탁판매
- 전시판매장 운영
-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·홍보
- 거창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사용자 조직화
- 거창푸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-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및 E-비즈니스에 관한 사항
- 꾸러미사업 추진 및 지원
- 전략육성 품목 기획생산 지원

(5)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

(6) 위탁자격 :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

(7) 위탁운영 방식

- 생산, 수집, 유통, 판매 등 업무 일체 위탁

(8) 소요예산(정상화 지원)

- 1년차 : 150백만원 (운영자금 50백만원, 예상결손 100백만원)
- 2~3년차 : 100백만원 (예상결손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본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범 군민적인 자율 참여와 지역농산물 Two-Track 생산, 수집, 유통, 판매 마케팅 구심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물류·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,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나.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“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
- 다.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2항에 의거 거창푸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